

창원지방법원 2024. 5. 24 선고 2023나10566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4. 5. 24 선고 2023나105666 판결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. 4. 20 선고 2022가단105569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 유한회사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성

변론종결 2024. 4. 5.

판결선고 2024. 5. 24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. 4. 20. 선고 2022가단105569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D과 피고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146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D의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2. 1. 1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한다.

피고는 D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22. 1. 18. 접수 제17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

○ 4면 나.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나. 피고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D을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이 어머니인 피고의 혼인생활 중 기여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노후 및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, 가사 사해행위라고 볼 경우에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.

○ 6면 아래에서 4행의 “다른 자녀들인 D”을 “다른 자녀들인 H”로 고친다.○ 8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③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으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.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망인 부부가 함께 살아온 거주지이므로 더욱 그러하다.

④ 원고가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(갑 제8호증)를 D 대신 피고가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D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영훈, 판사 이진석, 판사 김상욱